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2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세종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정서행동문제”란 청소년이 감정 또는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습, 인간관계 형성, 사회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원활히 소통·관계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

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상담 등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2.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환경 조성

4.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5. 교육 및 홍보시책

6.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마음건강 또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청소년 상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 관련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마음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자와 청소년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 ① 시장은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서행동문제로 보호·상담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의2.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9장 보칙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현 미